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화 재 예 방 , 소 방 시 설 설 치 · 유 지 및
안 전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에서 화재로 사망 38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재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,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고 있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시설을 소방시설(경보설비)의 화재알림설비로 도입하는 한편,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소방시설(경보설비)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 추가 및 설치대상을 정함(안 별표 1 제2호차목 및 안 별표 5 제2호 차목)

- 1)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(중소기업벤처부)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·발전시키고,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

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

2)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전통시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
나.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
(안 별표 5 제1호나목)

1) 조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언제든지 화재위험이 있고 한 층에 여러 세대를 나누어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리장치가 설치된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모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함

※ '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' 관련 감사원 개선 권고('20.3.)

다. 원자력발전소 중 “원자로 및 관계시설”에 대해서는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함(안 별표 5 비고 2)

1)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“원자로 및 관계시설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법령에 따라 “중앙소방기술심의회”를 통해 소방시설을 적용하던 것을 소방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(구, 국민안전처)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(2015.12월)하고, 지침으로 운영(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/2016.5.4.)

2) 2019년 6월 한수원,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관련 법령개정요구(원전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아닌 원안위 고시 및 원전 화재방호기술기준 적용)

라.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(안 별표5)

1) 물탱크실 및 펌프실 등을 별도로 확보하기 곤란하고 설치가 어려운 때에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헤드 살수밀도가 적합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팩키지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

마.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, 방화포 등 추가(안 별표5의 2)

1)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(2020.4.29.)를 계기로 구성된 “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”에서 마련한 “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”에 따라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와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7. 9. ~ 8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호스릴(Hose Reel)”을 “호스 릴(Hose Reel: 호스를 바퀴에 감아둔 상태로 사용할 때는 풀어서 사용하는 기구)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옥내소화전설비[호스 릴(Hose Reel: 호스를 바퀴에 감아둔 상태로 사용할 때는 풀어서 사용하는 기구)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)]

차. 화재알림설비

별표 5 제1호나목1) 중 “것: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”을 “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1)에 가) 및 나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) 아파트등

나) 오피스텔

차.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
중 전통시장으로 한다

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

1.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이하 이 표에서 “근린생활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
2. 별표 2 제23호가목 원자력발전소 중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“원자로 및 관계시설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화재안전기준(NFSC)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다.

별표 5의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,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별표 5의2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,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가스누설경보기: 가연성 가스가 누설 또는 발생된 경우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

바. 비상조명등: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

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여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

사. 방화포: 용접·용단 등 작업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써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

라. 가스누설경보기: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.

바. 비상조명등: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.

사. 방화포: 용접·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작업장

별표 6 제14호를 제20호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표 제18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표 제1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6호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 제19호를 제1호로 하며, 같은 표 제12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표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은 표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3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별표 2 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(전용 건축물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)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

치를 면제한다.

별표 6 제7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“자동화재탐지설비”를 “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0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“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”를 “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,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, 제17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화재알림설비	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.
------------	--

별표 6 제11호 중 “누전경보기”를 “자동화재속보설비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1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“누전경보기”를 “자동화재속보설비”로, 같은 란 중 “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(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)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”을 “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”로 하고, 같은 표 제9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“스프링클러설비”를 “화재알림설비, 스프링클러설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2호차목,

별표 5 제2호차목 및 별표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 제1호나목1)의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·증축·용도변경
을 허가·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“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.	제22조(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“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 한다)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[<u>호스릴(Hose Reel)</u>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]	가. ----- ----- ----- <u>호스 릴(Hose Reel)</u> : 호스를 바퀴에 감아둔 상태로 사용할 때는 풀어서 사용하는 기구) --

나. 삭 제 다. ~ 바. (생 략) 4. (생 략) ② (생 략)	— 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522